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730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개요	1
-------------	---

II. 주요 내용별 검토	3
---------------------	---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
2.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8
3.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 (임종득의원안, 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	19
4.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1
5. 사업장 및 학교의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7
6.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 제 적용기한 연장	40
7.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 용기한 연장	49
8. 농·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54
9.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63
10.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69

11.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81
12. 농·수협 조합원의 용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88
13.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95
1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04

I. 개요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73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4. 30.

(3) 회 부 일 : 2026. 5.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비롯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을 지원하고, 농어가의 소득안정과 경영부담 완화를 도모하며, 농림·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농림·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나.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69조).
- 다.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에 대한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 라. 농업·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사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6조).
- 마.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감면조항의 일몰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 제111조).
- 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11조의5).
- 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제공하는 전산용역과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3, 제121조의25).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현 행	임종득·윤준병·박대출의원안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조) ○ 대상 -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양도 ○ 과세특례 - 양도소득세액 100% 감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대상 - 적용기한 연장 (임종득의원안) 2028년 12월 31일 (윤준병의원안) 2031년 12월 31일 (박대출의원안) 2029년 12월 31일 ○ 과세특례 - (현행과 동일)

*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70),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박대출의원안 2026. 5. 22. 발의(의안번호 19053)

- ☐ 현행법¹⁾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되,
- ②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3년 이상” 자경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음.

- 각 개정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임종득의원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윤준병의원안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박대출의원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동 특례는 2003년에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적용 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며, 2023년 정기회에서 “2026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로 적용 기한이 연장된 바 있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전망)
금액	12,435	16,323	20,459	16,482	10,664	9,033	6,563	7,150

* 동 수치는 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②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자경 후 양도하는 경우를 합산한 금액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참고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제도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제도 개요]

- 목적: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대상: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으로 보조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대상농지: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등
- 지급요건: 보조금 지급약정 체결 전까지 소유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64세 이하 전업농업인등** 또는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시** 지급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첫째,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고령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은퇴와 농지 유동화를 촉진하여 세대 간 경영 이양을 활성화하는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종료할 경우, 고령 농업인은 농지 매도를 통한 경영이양보다는 농지 상속 또는 비효율적인 영농 지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을 통한 영농 규모화 촉진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참고로, 2024년 농가 경영주는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49만 5천 가구(전체 농가의 50.8%)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33만 2천 가구(33.1%), 50대는 12만 5천 가구(12.9%) 순으로, 전년대비 70세 이상 경영주는 증가(+3.6%)하였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하였음.

[2024년 경영주 연령별 농가]

(단위: 천 가구, %)

구 분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4년	974(100.0%)	5(0.5%)	27(2.8%)	125(12.9%)	322(33.1%)	495(50.8%)
증 감	-25.3	-0.8	-5.7	-16.1	-20.1	17.4
증감률	-2.5	-15.4	-17.3	-11.4	-5.9	3.6

주: 증감, 증감률은 전년 대비 수치

자료: 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둘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는 성실 경작을 장려하여 농지 보전을 유도²⁾하고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는 측면이 있음.

최근 10년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70% 수준에 머물러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소득 감면액을 농업인의 소득으로 환원하는 등 조세특례를 유지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10년간 농가 가구당 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B)
	농가소득(A)	비율(A/B)	
2015년	37,215	70.6%	52,683
2016년	37,197	69.5%	53,493
2017년	38,239	71.4%	53,577
2018년	42,066	73.5%	57,195
2019년	41,182	70.3%	58,545
2020년	45,029	72.8%	61,839
2021년	47,759	74.9%	63,771
2022년	46,153	69.7%	66,243
2023년	50,828	72.2%	70,389
2024년	50,597	69.9%	72,357

주: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및 비농업소득을 합한 농가의 총소득을 말함. 2019년부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동(洞)지역의 가구원 1인 이상 일반가구(농림어가 포함) 중 가구주 직업이 임금근로자인 가구를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2)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3건의 개정안은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을 각각 상이하게 정하고 있는데(2028년 12월 31일(임동득의원안, 2년), 2029년 12월 31일(박대출의원안, 3년), 2031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5년)),
-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

문 의 처
02)6788-5150

3) 재정경제부는 제도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세법개정시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2.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현행	개정안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5, 제89조의3) 대상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 등 대상소득: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의 이자·배당소득 한도 - 출자금: 1명당 2,000만원 - 예탁금: 1명당 3,000만원 특례내용 및 적용기한 - 농·어·임업인 조합원 또는 소득 요건 충족자(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대상자: (현행과 같음) 대상소득: (현행과 같음) 한도 - 출자금: (현행과 같음) - 예탁금: (현행과 같음) 특례내용 및 적용기한 (현행과 같음)																
<table><tr><th>출자일 가입일</th><th>'28.12.31. 까지</th><th>'29.1.1.~ '29.12.31.</th><th>'30.1.1. 부터</th></tr><tr><td>감면 내용</td><td>비과세</td><td>5% 분리과세</td><td>9% 분리과세</td></tr></table>	출자일 가입일	'28.12.31. 까지	'29.1.1.~ '29.12.31.	'3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table><tr><th>출자일 가입일</th><th>'30.12.31. 까지</th><th>'31.1.1.~ '31.12.31.</th><th>'32.1.1. 부터</th></tr><tr><td>감면 내용</td><td>비과세</td><td>5% 분리과세</td><td>9% 분리과세</td></tr></table>	출자일 가입일	'30.12.31. 까지	'31.1.1.~ '31.12.31.	'32.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출자일 가입일	'28.12.31. 까지	'29.1.1.~ '29.12.31.	'3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출자일 가입일	'30.12.31. 까지	'31.1.1.~ '31.12.31.	'32.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그 밖의 가입자	그 밖의 가입자																
<table><tr><th>출자일 가입일</th><th>'25.12.31. 까지</th><th>'26.1.1.~ '26.12.31.</th><th>'27.1.1. 부터</th></tr><tr><td>감면 내용</td><td>비과세</td><td>5% 분리과세</td><td>9% 분리과세</td></tr></table>	출자일 가입일	'25.12.31. 까지	'26.1.1.~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table><tr><th>출자일 가입일</th><th>'30.12.31. 까지</th><th>'31.1.1.~ '31.12.31.</th><th>'32.1.1. 부터</th></tr><tr><td>감면 내용</td><td>비과세</td><td>5% 분리과세</td><td>9% 분리과세</td></tr></table>	출자일 가입일	'30.12.31. 까지	'31.1.1.~ '31.12.31.	'32.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출자일 가입일	'25.12.31. 까지	'26.1.1.~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출자일 가입일	'30.12.31. 까지	'31.1.1.~ '31.12.31.	'32.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개정안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⁴⁾에 대한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배당소득등”)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농어민·서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⁵⁾으로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기준 및 단계적 과세전환 체계를 도입함.

현재 조합원 및 소득 요건 충족자(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⁶⁾에 대하여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5) 재정경제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6)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조합원·회원 등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일 것

나. 가목 외의 거주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원천징수세율

가.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나. 2030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모든 조합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대한 배당소득 및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한편, 그 밖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예탁금 가입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하여는 5%로 분리과세 중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 또는 예탁금 가입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하여는 9%로 분리과세 예정임.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구분	적용기간	특례내용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① 농·어·임업인 조합원 또는 ② 소득 요건 충족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2028. 12. 31	비과세
		2029. 1. 1. ~ 2029. 12. 31	5% 분리과세
		2030. 1. 1. ~	9% 분리과세
	그 밖의 가입자	~ 2025. 12. 31	비과세
		2026. 1. 1. ~ 2026. 12. 31	5% 분리과세
		2027. 1. 1. ~	9% 분리과세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연혁을 살펴보면,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는 1976년 신설되었으며, 1995년 일몰이 도입된 이후 적용기한이 3회 연장되었다가 2001년에 영구 비과세로 전환되었음. 이후 2007년에 일몰이 재도입되어 2008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5년 등 7차례 연장되었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 ②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합을 말한다.

한편,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1976년 신설되었으며, 1995년 일몰이 도입된 이후 1996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08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5년 등 12차례 연장되었음.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음.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1976년 200만원으로 도입되어, 1987년 500만원, 1992년 1,000만원, 2024년 2,000만원까지 증액되었고, 예탁금 비과세 한도는 1976년부터 100만원으로 도입되어, 이후 1978년 500만원, 1987년 1,000만원, 1991년 2,000만원, 2009년 3,000만원까지 증액되었음.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주요 연혁]

시 기	내 용
1976년~1977년	· 예탁금 100만원, 출자금 200만원 비과세 신설 시행
1978년~1986년	· 예탁금 비과세 한도 인상 : 100만원 → 500만원
1987년~1988년	· 예탁금, 출자금 비과세 한도 인상 및 이용고배당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 - 예탁금 : 500만원 → 1,000만원 - 출자금 : 200만원 → 500만원
1989년 이후	· 준조합원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
1992년~1994년	· 비과세 한도 인상 : - 예탁금 : 1,000만원 → 2,000만원 - 출자금 : 500만원 → 1,000만원
2009년~2012년	· 예탁금 비과세 한도 인상 : 2,000만원 → 3,000만원
2024년 이후	· 출자금 1천만원 → 2천만원으로 납입한도 증액
2025년 이후	· 소득 요건 신설 : - 조합원 및 소득 요건 충족자에 대하여만 비과세, 그 외의 가입자는 5% 분리과세

자료: 재정경제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한편, 납입한도 상향 등으로 조합에 대한 출자금 및 예탁금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라 조세지출 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1조 359억원을 기록하였음.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20년	12,692,288	6.37	593,049	5.12	311,860	13.98	5,920,854	13.13	8,366,135	12.1
'21년	13,618,962	7.30	637,003	7.41	360,607	15.63	6,561,631	10.82	9,599,412	14.7
'22년	14,220,952	4.40	673,672	5.76	397,170	10.14	6,770,079	3.18	9,837,449	2.50
'23년	14,503,038	2.00	708,519	5.17	432,643	8.93	6,463,591	△4.53	9,248,811	△6.00
'24년	15,167,014	4.60	729,962	3.03	470,086	8.65	6,621,311	2.44	9,832,390	6.30
'25년	15,666,925	3.30	739,339	1.28	494,860	5.27	6,747,953	1.91	9,202,146	△6.41

주: 연말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년	53,491,025	△5.4	6,204,701	△7.2	1,737,220	2.3	28,964,829	△1.4	46,848,210	△2.1
'21년	49,639,937	△7.2	6,351,680	2.4	1,773,703	2.1	29,139,459	0.6	47,899,564	2.2
'22년	57,413,110	15.7	7,976,482	25.6	2,135,860	20.4	33,409,369	14.6	57,672,907	20.4
'23년	62,112,233	8.2	8,254,928	3.5	2,353,041	10.2	34,174,623	2.3	57,865,172	0.3
'24년	63,110,017	1.6	8,200,585	△0.7	2,418,508	2.78	33,960,955	△0.6	56,394,950	△2.5
'25년	61,044,877	△3.3	7,519,872	△8.3	2,380,003	△1.6	32,321,792	△4.83	51,061,731	△9.46

주: 연말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연도별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실적)	2025(전망)	2026(전망)
감면액	3,760	3,724	7,094	10,359	10,680	11,480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배당소득등 비과세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첫째, 상호금융기관은 농어촌·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농어업인과 지역 주민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농어민 및 지역 주민의 저축을 지원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수신 기반과 지역 금융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상호금융기관은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농어업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바, 비과세 특례가 축소되는 경우 예탁금 이탈⁷⁾에 따른 수신 기반 약화로 농어업인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농어가 연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⁸⁾이며, 상호금융기관은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능도 수행⁹⁾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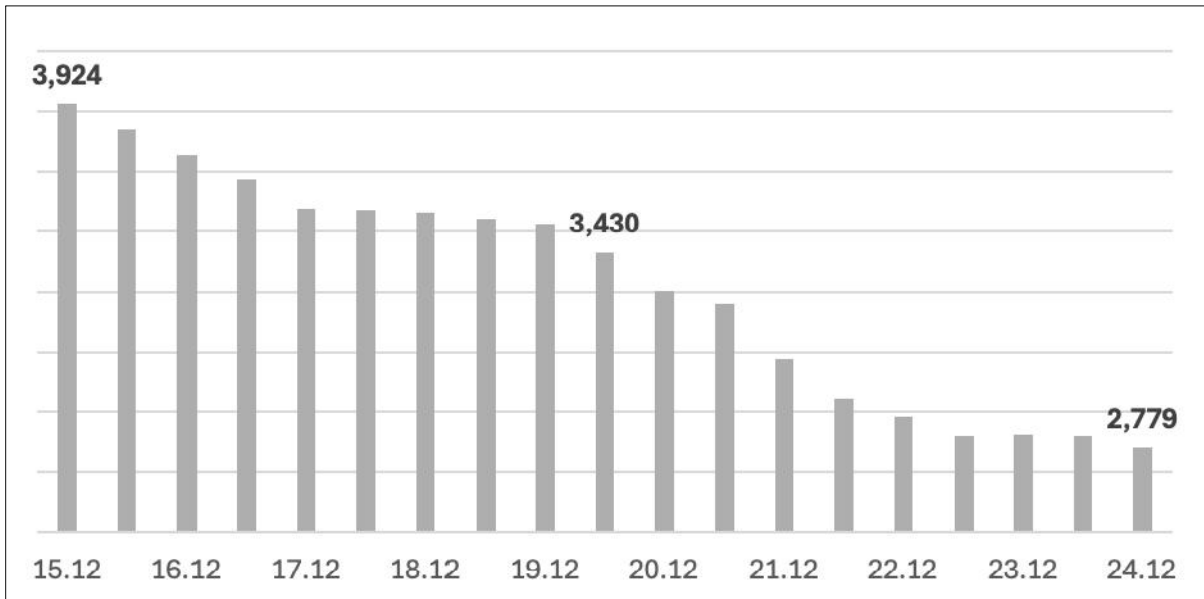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 2025.11.7.

8) 2024년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60만원,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6,365만원인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8,038만원으로 조사(통계청,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9) 디지털 전환 확산과 함께 제1금융권 시중은행의 점포 수는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상호금융은 오히려 점포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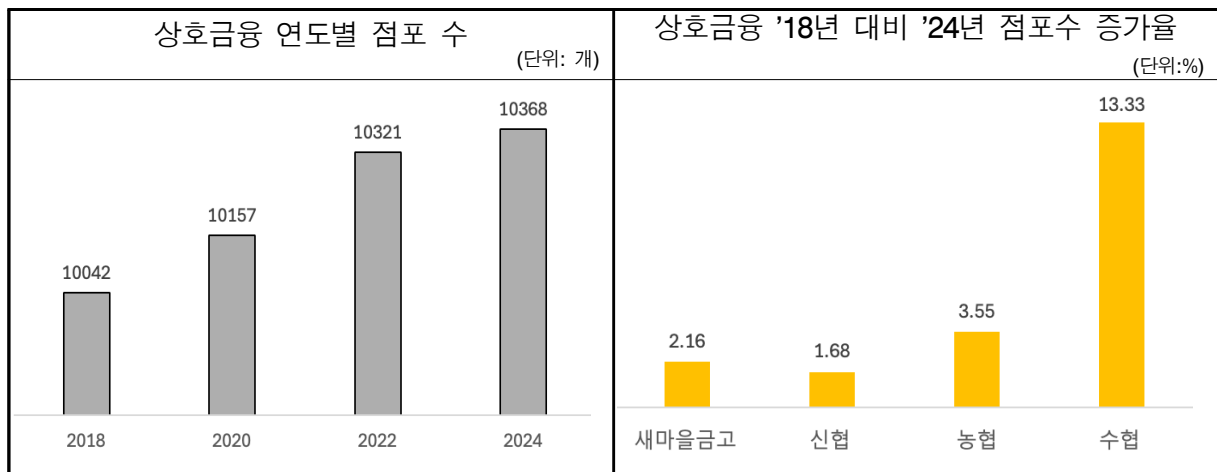
[제1금융권 4대 은행 점포 수 합계 추이]



주: 제1금융권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합계를 의미함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상호금융 점포수 현황]



주: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상호금융 고려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상호금융의 수신 기반을 유지하고 지역 금융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둘째, 상호금융기관의 공익적 기능과 제1금융권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업 여건을 고려할 때, 상호금융기관의 수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과세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상호금융기관은 신탁, 퇴직연금, ISA 등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이 제한¹⁰⁾되는 등 제1금융권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현실에서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종료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우량 조합원 등의 자금이 이탈하여 상호금융기관의 재무구조와 영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원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축소로 이어져 추가적인 자금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 다만, 개정안은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지원 체계를 다시 5년 연장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현행법 개정 당시 정책적 판단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2025년 세법개정을 통해 농·어·임업인 조합원 및 일정 소

10) 상호금융(단위조합 기준) 취급상품 제한

구 분	근거법률	제한 사유
신탁, 퇴직연금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인·허가 사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특법, 자본시장법	유사 신탁업자(은행, 증권회사 등)만 취급 허용
양도성예금증서	한국은행법, 금융위규정	한은법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미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은행법, 금융위 결정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만 가능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인·허가 사항
국공채 창구판매	국채법, 기재부규정	은행, 증권회사만 취급 허용
외국환	외국환거래법	환전 등 일부업무 제한적 취급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법	신용카드업자에 미포함
주택신용보증서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 미체결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은행법에 의한 제1금융권만 취급 허용

자료: 농협중앙회

득 이하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유지하는 한편, 그 밖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지역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준조합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지역거주자가 시중은행의 예·적금처럼 비교적 용이하게 조합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구조임.

[상호금융기관 가입 요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회원	지역 농업인	지역 어업인	지역 임업인	지역거주자 등	지역거주자 등
준조합원	지역거주자 등	제한 없음	지역거주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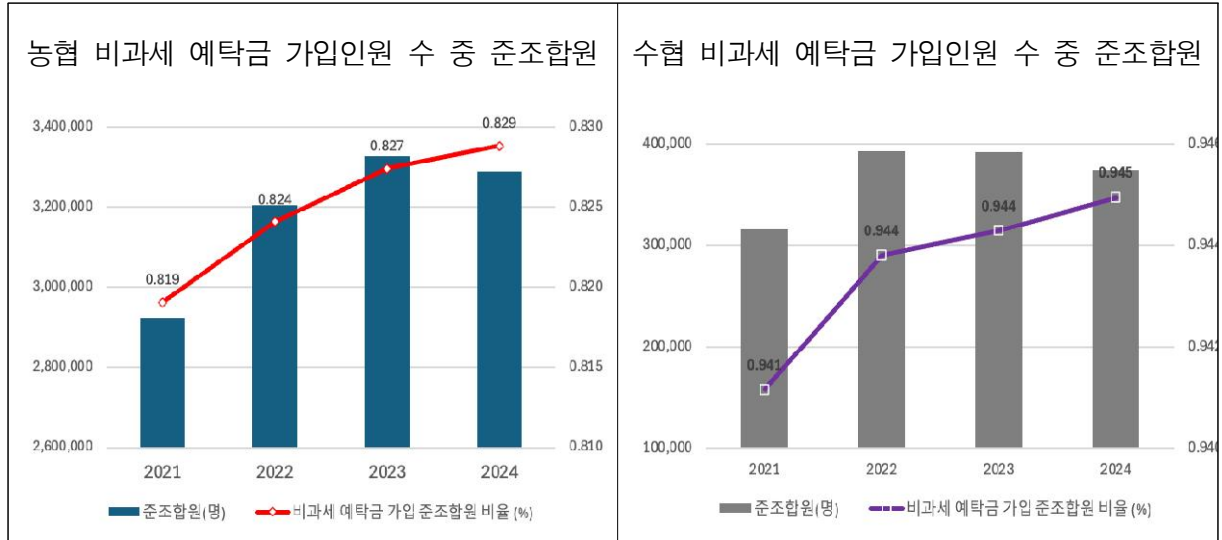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동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조합 활동과 무관한 일반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특히, 직장형 새마을금고 등을 중심으로 고소득자가 고배당·고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상당수가 일반 금융소비자 또는 준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났음¹¹⁾.

11) 조합원/준조합원 별 비과세 대상 예탁금 현황('24년말 기준, 출처 : 각 기관)

- 농협 : 조합원(11.6조원, 18.4%), 준조합원(51.4조원, 81.6%)
- 수협 : 조합원(1.0조원, 5.0%), 준조합원(19.0조원, 95.0%)

[농협 및 수협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중 준조합원 비율]



출처: 농협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서는 ① 수혜 자격에 일정한 소득요건을 도입하거나 조합원 중심으로 재편하여 실질적 필요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방안 혹은 ② 일몰계획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현행법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조정하고 단계적 과세전환 체계를 마련한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은 제도 개편이 시행된 이후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당시의 입법 취지와 정책적 판단을 변경할 충분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하면, 상호금융기관의 수신기반 유지 및 농어촌 금융지원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2025년 세법개정을 통해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을 조정하고 단계적 과세전환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서, 조세지출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0

3.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 (임종득의원안, 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66조) ○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 특례 ① 법인세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6\text{억원} \times \text{조합원 수} \times \text{소득률} \times \text{사업연도 월수} / 12)$ 한도 내 면제 - 그 외: $(1,200\text{만원} \times \text{조합원수} \times \text{사업연도 월수} / 12)$ 한도 내 면제 ②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 그 외: 1,200만원 이하 면제 * 나머지 5% 세율로 분리과세 ③ 양도소득세 - 농지, 초지,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 적용기한: <u>2026.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 특례: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임종득의원안)</u> <u>2031. 12. 31.(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u>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67조) ○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어조합법인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 특례 ① 법인세 -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 (3천만원원×조합원 수×사업연도 월수/12) 한도 내 면제 - 그 외: (1,200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 월수/12) 한도 내 면제 ②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 1,200만원 이하 면제 * 나머지 5% 세율로 분리과세 ③ 양도소득세 -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u>2026. 12. 31.</u>	○ 특례: (현행과 같음)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68조) ○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 ○ 특례 ① 법인세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50억원 × 소득률 × 사업연도 월수/12) 한도 내 면제 - 그 외: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②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 나머지 분리과세 ③ 양도소득세 - 농지, 초지,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 적용기한: <u>2026.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 특례: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31. 12. 31.(윤준병의원안)</u>
	○ 적용기한: <u>2028. 12. 31.(임종득의원안)</u>

현 행	개정안
	<u>2031. 12. 31.(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u> ○ 시행일: 2027. 1. 1.(임종득의원안, 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70), 신성범의원안 2026. 4. 21. 발의(의안번호 18480),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¹²⁾에 따라 농어업의 경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협업적 또는 기업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는 법인임.

이는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3년 말 기준 영농조합법인은 10,132개, 영어조합법인은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719개, 농업회사법인은 16,387개가 운영되고 있음.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현황]

(단위: 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영농조합법인	10,568	11,016	11,137	10,163	10,230	10,136	11,337	10,001	10,132
영어조합법인	361	398	443	480	513	529	542	682	719
농업회사법인	7,209	9,097	10,721	11,617	13,085	14,363	14,268	16,103	16,38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합법인과 회사법인은 지향하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운영방식에는 일부 차이가 있음.

영농·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인 5인 이상의 발기가 필요하며 비농·어업인은 출자는 가능하지만 의결권은 제한되는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설립 가능하고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90%(총출자액 80억원 초과 시 8억원 제외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으며 의결권 제한도 없음.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구 분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근거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립목적	협업적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수행
설립요건	농어업인 5인 이상 발기인 필요	농업인 1인 이상이 설립 가능
출 자	비농어업인은 준조합원으로서 출자 가능(의결권 없음)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90%까지(총출자액 80억원 초과시 8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 가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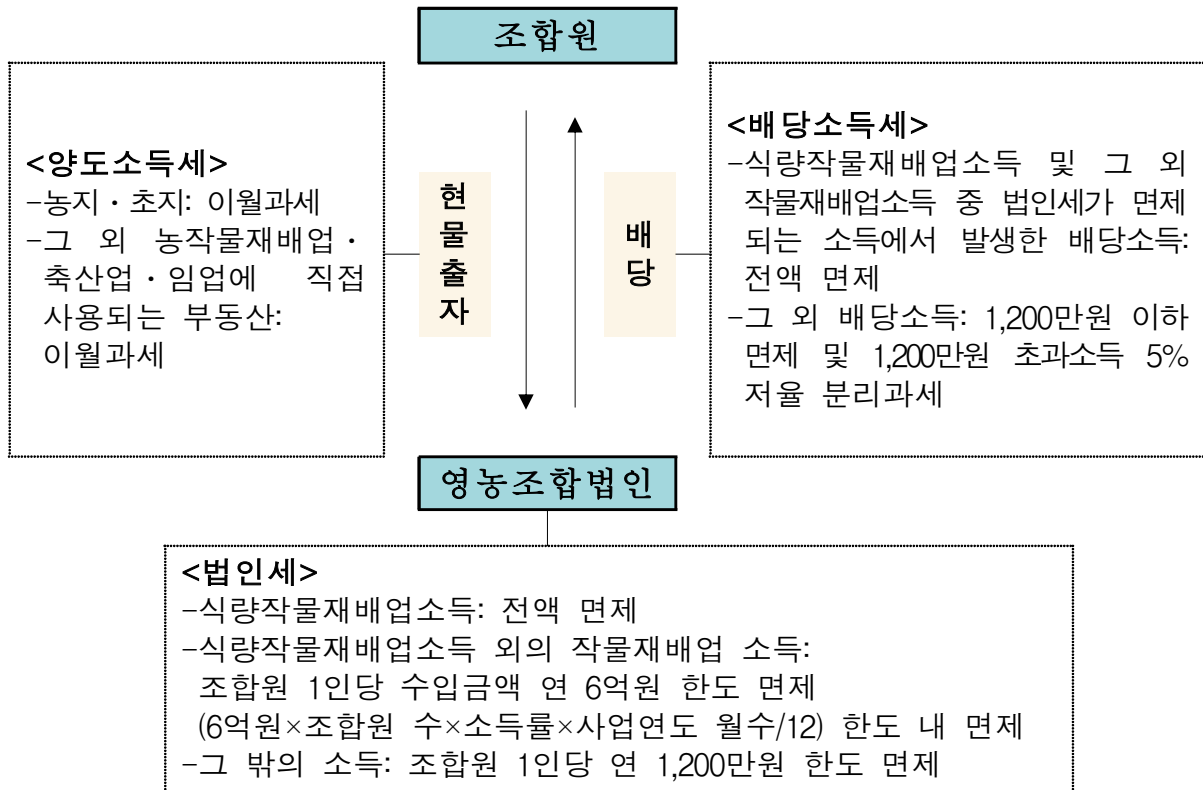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FTA(Free Trade Agreement) 체결과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에 대비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제도 및 조세특례 도입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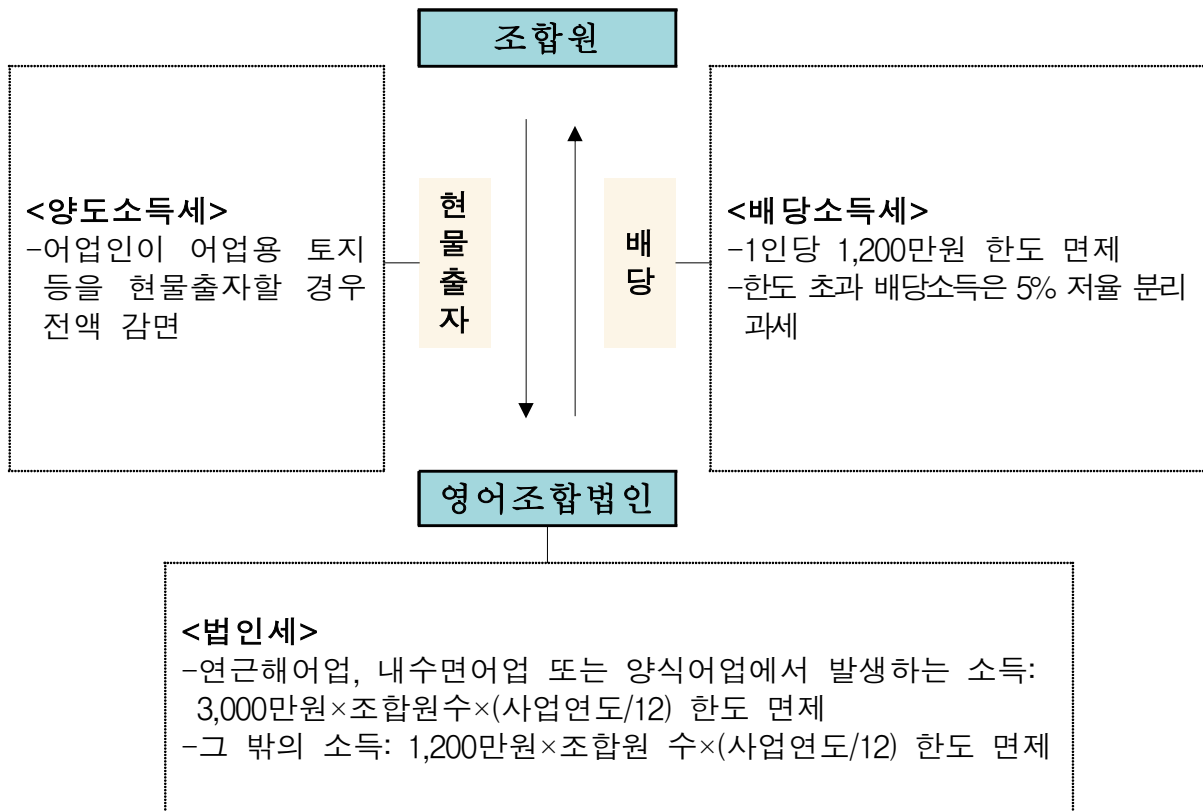
구 분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제도 도입	1990. 4. 7.	1996. 12. 31.	1995. 6. 23.
제도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조세특례 도입	1990. 1. 1.	1998. 1. 1.	1996. 1. 1.
조세특례 법적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조세특례 내용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간 일부 차이는 있으나, ① (양도소득세)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초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허용하고, ② (법인세) 법인소득의 원천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며, ③ (배당소득세) 조합원·출자자에 대한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의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분리과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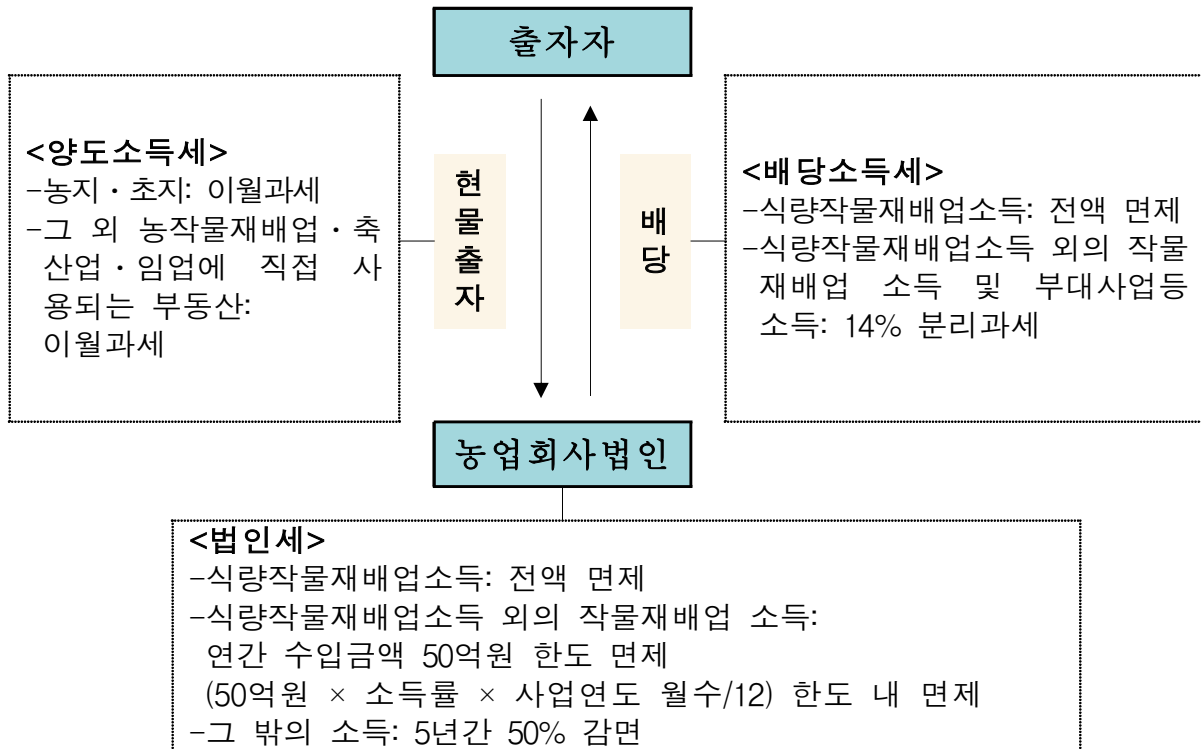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위 3개 조세특례는 1998년 전부개정 당시 일몰이 설정되어 2003년까지를 적용기한으로 하였으나, 이후 9차례에 걸쳐 적용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284	277	328	343	387	379	342	350	384	399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25	29	33	31	29	36	36	39	51	5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154	253	227	177	193	278	240	224	234	240
합계	463	559	588	551	609	693	618	613	669	691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024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감면 실적]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영농조합법인	2,241	16,079	15	333
영어조합법인	509	3,919	1	0
농업회사법인	687	9,700	10	40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감면 실적]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영농조합법인	16	350	0	0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0	0	0	0

주: 국세청은 제6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실적을 합하여 공개하고 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개정안은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협업적·기업적 농·어업 경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업 인력의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농가인구의 65세 이상 비중은 51.3%이고 어가인구의 65세 이상 비중은 48.2%로 각각 5년 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20.3%) 대비 고령화 비율이 높은 상황임.

[연령 계층별 농가 인구와 전체인구 비교]

(단위: 천명, 세, %)

	2020	구성비	2025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인구	구성비
합 계	2,314	100.0	2,507	100.0	193	8.3	51,685	100.0
0~14세	100	4.3	72	2.9	-29	-28.4	5,258	10.2
15~64세	1,234	53.3	1,149	45.8	-85	-6.9	35,912	69.5
65세 이상	980	42.3	1,286	51.3	306	31.2	10,514	20.3
중위 연령	62.4		65.3		2.9		46.7	
고령인구 비중	42.3		51.3		9.0		20.3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2026. 4.

[연령 계층별 어가 인구와 전체인구 비교]

(단위: 천명, 세, %)

	2020	구성비	2025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인구	구성비
합 계	97	100.0	95	100.0	-2.4	-2.5	51,685	100.0
0~14세	6	5.7	4	4.1	-1.7	-30.5	5,258	10.2
15~64세	57	58.2	45	47.7	-11.4	-20.1	35,912	69.5
65세 이상	35	36.0	46	48.2	10.7	30.6	10,514	20.3
중위 연령	60.8		64.5		3.7		46.7	
고령인구 비중	36.0		48.2		12.1		20.3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2026. 4.

또한, 농·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 유도를 통한 법인의 규모화 및 자본구조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음.

둘째, 도시와 농·어촌간 소득격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및 위 법인의 주요 구성원인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최근 10년간 농·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낮은 편이고, 특히 농가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최근 10년간 농·어가 가구당 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C)
	농가소득(A)	비율(A/C)	어가소득(B)	비율(B/C)	
2015년	37,215	70.6%	43,895	83.3%	52,683
2016년	37,197	69.5%	47,077	88.0%	53,493
2017년	38,239	71.4%	49,016	91.5%	53,577
2018년	42,066	73.5%	51,836	90.6%	57,195
2019년	41,182	70.3%	48,415	82.7%	58,545
2020년	45,029	72.8%	53,187	86.0%	61,839
2021년	47,759	74.9%	52,392	82.2%	63,771
2022년	46,153	69.7%	52,911	79.9%	66,243
2023년	50,828	72.2%	54,779	77.8%	70,389
2024년	50,597	69.9%	63,652	88.0%	72,357

주: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의 총소득을 말함.
2019년부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동(洞)지역의 가구원 1인 이상 일반가구(농림어가 포함) 중
가구주 직업이 임금근로자인 가구를 의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 한편, 임종득의원안은 영농조합법인 등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신성범 의원안은 위 2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윤준병의원안은 이에 더해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까지 총 3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

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4.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 면제대상 - 전기사업자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제1호)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2031년 12월 31일
☐ 개별소비세 면제(제111조제1항) ○ 면제대상 - 전기사업자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제2호)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2031년 12월 31일 ☐ 부 칙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개정안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비용을 경감하고 도서지방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동 특례제도는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가 처음 도입된 1977년에 마

련된 것으로, 규정이 처음 신설될 당시에는 적용기한이 따로 없었으나 1998년 말 (구)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2003년 말까지 적용기한을 처음 설정하였고, 이후 기한이 계속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 최근 도서지방 자가발전에 사용된 석유량과 조세감면액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3,708kl, 2024년에는 3,805kl, 2025년에는 3,997kl의 석유류가 자가발전을 위하여 공급되었고, 그에 따른 조세감면액은 각각 17억 6,700만원, 19억 900만원, 23억 3,400만원으로,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감면액 현황]

(단위 : kl, 백만원)

연도별	유종	공급물량	조세감면액				
			교통세/ 개소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계
2021년	경유	3,426	1,285	193	334	405	2,216
	휘발유	-	-	-	-	-	-
	그 외	12	-	-	-	2	2
	계	3,438	1,285	193	334	407	2,219
2022년	경유	3,130	823	123	214	499	1,660
	휘발유	2	1	0	0	0	1
	그 외	11	-	-	-	3	3
	계	3,143	824	124	214	502	1,663
2023년	경유	3,692	879	132	252	498	1,761
	휘발유	3	1	0	0	0	2
	그 외	14	-	-	-	4	4
	계	3,708	880	132	253	502	1,767
2024년	경유	3,791	997	150	259	498	1,903
	휘발유	3	1	0	0	0	2
	그 외	12	-	-	-	3	3
	계	3,805	998	150	260	501	1,909
2025년	경유	3,981	1,270	191	330	536	2,327
	휘발유	4	2	0	0	1	3
	그 외	11	-	-	-	3	3
	계	3,997	1,272	191	331	540	2,334

자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편,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된 면세유 공급 대상 도서지방은 2025년 말 기준 총 30개 지역임.

[2025년도 지역별 도서지방 자가발전시설 공급 현황]

지역	자가발전 도서지역 수	자가발전 도서지역명
경남	5	지심도, 와도, 국도, 수도, 소매물도
인천	3	지도, 굴업도, 백아도
전남	17	하태도, 장도, 만재도, 상태도, 우이도, 금죽도, 각이도, 소각시도, 안마도, 모항도, 소늬도, 대늬도, 맹골도, 서거차도, 외병도, 광대도, 가사도
전북	2	관리도, 방축도
제주	2	추포도, 횡간도
충남	1	죽도
계	30	

자료: 수협중앙회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육지에 비해 전기의 공급이 어려운 도서지방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도서지방의 생활 여건은 육지와 비교했을 때 여러 측면에서 열악하며, 특히 전기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가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서지방 거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면세유 제도와 같은 조세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둘째, 현재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비용 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¹³⁾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석유류에 대

1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 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한 면세가 중단될 경우 세수는 증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연료비 부담 증가로 인해 자가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도서주민의 이용상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발전시설 관리·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시·군)의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면세유 혜택이 도서지역의 자가발전 시설 운영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같은 지역 내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할 우려가 있음.

전력망이 연결된 일부 도서지역 주민들은 이미 일반 전력 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자가발전 시설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면세유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전기요금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 사업자들은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 자가발전 운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17억원 등 2027~2031년까지 5년간 총 85억원(연평균 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부가가치세	△5	△5	△5	△5	△5	△25	△5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11	△11	△11	△11	△11	△53	△11
교육세	△1	△1	△1	△1	△1	△7	△1
합계	△17	△17	△17	△17	△17	△85	△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2025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5년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1년만 연장하였음.

정부는 당초 3년 연장안을 제출하였으나 논의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1년만 연장하되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로 하여금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같이 의결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사업장 및 학교의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illegible]

*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개정안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 및 학교의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기한(2026년 12월 31일)을 연장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학생의 복리후생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동 제도는 1983년 (구)「조세감면규제법」에서 사업장 및 학교의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도입되었음.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¹⁴⁾이 면세 대상에 추가되었고, 이후 적용기한이 계속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사업장 구내식당의 경우,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이나 버스 차고지는 대부분 주변 상권이 없는 외진 곳에 위치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버스 운전기사가 식사的大部分을 구내식당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학교 구내식당 및 위탁급식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이 될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급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특히, 2021년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중

14)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료될 경우 무상급식 재원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임.

[2021~2024년 급식 부담 주체별 학교급식 소요 예산 현황]

구분	교육비 특별회계	자치단체 지원금	보호자 부담금	발전기금 /기타	계
2021년	4조 2,523억원	1조 5,082억원	3,077억원	1,511억원	6조 2,193억원
	(68.4%)	(24.2%)	(5.0%)	(2.4%)	(100%)
2022년	4조 8,443억원	1조 7,726억원	2,843억원	1,819억원	7조 831억원
	(68.4%)	(25.0%)	(4.0%)	(2.6%)	(100%)
2023년	5조 4,747억원	1조 6,878억원	3,704억원	2,249억원	7조 7,579억원
	(70.6%)	(21.7%)	(4.8%)	(2.9%)	(100%)
2024년	5조 9,138억원	1조 6,971억원	2,040억원	4,483억원	8조 2,633억원
	(71.6%)	(20.5%)	(2.5%)	(5.4%)	(100%)

자료: 교육부

□ 한편,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23년 정기회에서는 동 제도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 바 있음.

6.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 면제대상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제3호)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28년 12월 31일</u> (임종득의원안) - <u>2029년 12월 31일</u> (엄태영의원안) - <u>2031년 12월 31일</u> (박상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엄태영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51),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70), 박상웅의원안 2026. 3. 25. 발의(의안번호 17722),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위 4건의 개정안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년(임종득의원안), 3년(엄태영의원안) 또는 5년(박상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연장함으로써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한편, 각종 자연재해·가축질병·FTA 확대 등으로 농어업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취지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3호는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¹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규모화·현대화를 촉진하여 농어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입법취지에 따라 1990년부터 도입·시행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당시 2003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적용기한을 정하였으나, 이후 8차례에 걸쳐 2~3년씩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¹⁶⁾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농어업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을 의뢰한 농어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도·농간 소득 격차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농·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0~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2025년 어가 소득이 감소하여 도시근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16)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을 파악·관리하기 곤란함.

로자가구소득 대비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등 소득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가·어가 가구당 연간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가구소득(C)
	소득(A)	비율(A/C)	소득(B)	비율(B/C)	
2021년	47,759	64.1	52,392	70.3	74,507
2022년	46,153	59.1	52,911	67.7	78,113
2023년	50,828	60.5	54,779	65.2	84,054
2024년	50,597	58.5	63,652	73.6	86,464
2025년	54,667	60.5	58,980	65.2	90,405

주: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가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인 이상 분기별 도시근로자가구소득(명목)의 합산액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농가·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둘째,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용역은 농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세제혜택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잠정)」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는 124만 2천 가구, 농가인구는 250만 7천명, 어가는 4만 7천 가구(해수면 기준), 어가 인구는 9만 5천명으로, 최근 20년 간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25년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가구 구성을 보면, 평균 가구원 수가 하락하는 추세이며 1인 가구 비중이 농가는 27.1%, 어가는 27.6%로 2020년 대비 각각 7.1%p,

9.5%p 증가하였음.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2026. 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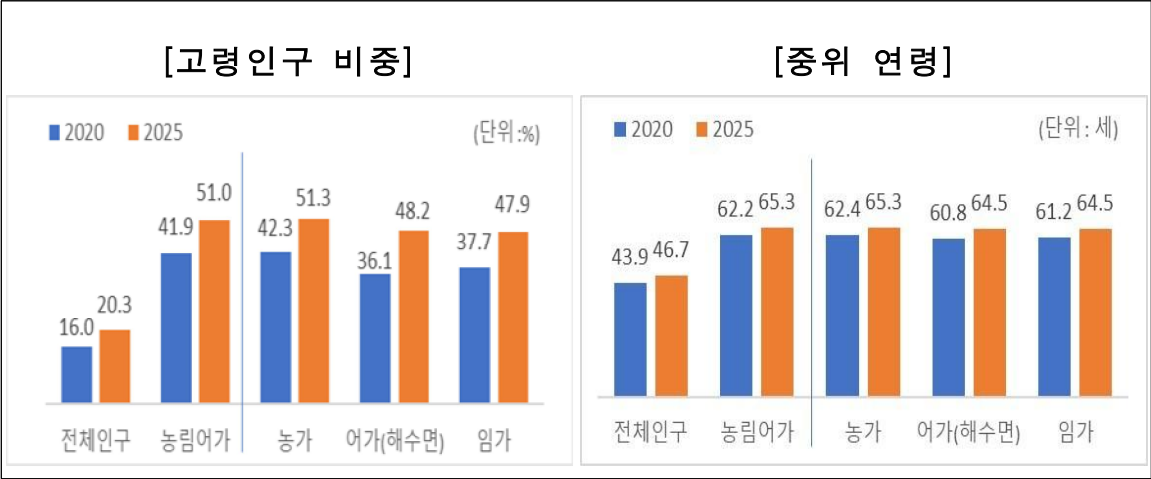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농·어업 기본구조 변화 현황]

구 분	단 위	2005	2010	2015	2020	2025
□ 농가 수 (전체가구 대비 비중)	천가구 (%)	1,273 (8.0)	1,177 (6.8)	1,089 (5.6)	1,035 (4.8)	1,242 (5.5)
□ 농가 인구 (전체인구 대비 비중)	천명 (%)	3,434 (7.3)	3,063 (6.4)	2,569 (5.1)	2,314 (4.5)	2,507 (4.8)
○ 평균 가구원	명	2.7	2.6	2.4	2.2	2.0
○ 성 비		95.4	96.1	96.9	99.4	100.8
○ 중위 연령	세	54.1	55.7	60.1	62.4	65.3
○ 연령별 구성						
- 0 ~ 14세	%	9.8	8.8	5.8	4.3	2.9
- 15 ~ 64세		61.1	59.4	55.8	53.3	45.8
- 65세 이상		29.1	31.8	38.4	42.3	51.3
□ 경영주						
○ 평균 연령	세	61.0	62.3	65.1	66.1	67.7
○ 연령 분포						
- 40대 이하	%	17.9	14.7	9.0	7.2	5.5
- 60대 이상		58.3	60.9	68.3	73.3	78.8
□ 어가 수 (전체가구 대비 비중)	천가구 (%)	80 (0.5)	66 (0.4)	55 (0.3)	43 (0.2)	47 (0.2)
□ 어가 인구 (전체인구 대비 비중)	천명 (%)	221 (0.5)	171 (0.4)	128 (0.3)	97 (0.2)	95 (0.2)
○ 평균 가구원	명	2.8	2.6	2.3	2.2	2.0
○ 성 비		100.2	100.0	100.8	105.1	105.0
○ 중위 연령	세	49.7	53.3	58.0	60.8	64.5
○ 연령별 구성						
- 0 ~ 14세	%	12.1	9.2	6.7	5.7	4.1
- 15 ~ 64세		69.1	67.7	62.8	58.2	47.7
- 65세 이상		18.8	23.1	30.5	36.1	48.2
□ 경영주						
○ 평균 연령	세	56.9	59.1	62.0	63.2	65.4
○ 연령 분포						
- 40대 이하	%	26.4	18.8	12.2	11.4	9.6
- 60대 이상		41.9	49.4	59.8	67.2	73.8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2026. 4. 28.

또한 농어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을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25년 농가 고령인구 비중은 51.3%, 어가 고령인구 비중은 48.2%로 전체 인구 고령인구 비중 20.3% 대비 그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중위연령은 농가의 경우 65.3세, 어가의 경우 64.5세로 2020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 중위연령 46.7세와의 차이 역시 상당한 수준임.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고령인구·중위연령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2026. 4. 28.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
 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외에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
 한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축산·임·어업 분야 주요 국세감면제도]

근거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87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5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105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제106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등(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제70조·제87조의2·제88조의5),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재정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고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한편,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동 제도의 감면기간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으며, 각 개정안은 2년(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2029년 12월 31일까지) 또는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농업경영 및 농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세수 감소분에 대해 2년 연장 시 총 88억원, 3년 연장 시 총 288억원, 5년 연장시 총 57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일몰기한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2028년말	△81	△95	-	-	-	△176	△88
~2029년말	△61	△92	△107	△28	-	△288	△72
~2031년말	△81	△95	△112	△131	△154	△573	△115

주: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귀속분의 경우 당해 연도에 3/4 징수, 차년도에 1/4 징수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조정

2. 어업 경영 및 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 않아 추계에서 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7.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 면제대상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제4호의5)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면제대상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u>2031년 12월 31일</u> ☐ 부 칙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연료비 부담을 감소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¹⁷⁾으로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택을 의미함¹⁸⁾.

17)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50년

영구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

[2026년 영구임대주택 공급 현황]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건설재원	(출자) 85%, (입주자) 2.5%, (사업자) 12.5%
입주자격	(1순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 등 (2순위)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등
임대조건	시세의 30% 이하, 임대유기기간 50년

자료: LH,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 영구임대주택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말 기준 22만 5,410호임.

[영구임대주택 공급재고 추이]

(단위: 호)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영구임대	195,699	199,267	201,653	207,240	209,290	212,985	215,985	220,711	224,116	225,410

자료: 국토교통부

□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은 지역난방, 중앙난방 및 개별난방의 3가지 방

18) 보증금과 임대료가 보통 시세의 30% 수준에서 결정됨.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열을 단열관을 통해 인근 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방식이고, 중앙난방은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대형 보일러로 직접 열을 생산하는 방식이며, 개별난방은 각 세대별 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방식임.¹⁹⁾

이 중 지역난방의 경우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직접 난방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방식²⁰⁾으로 난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2025년 말 기준 LH(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중에서 지역난방 유형의 주택은 47,508호 규모로, 부가가치세 감면규모는 11억 1,900만원임

[주택관리공단 관리 대상 주택 수 및 지역난방 주택 수]

(단위: 호,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주택(A)		144,691	144,691	144,691	144,691	144,725
	지역난방 주택(B)	47,498	47,498	47,498	47,498	47,508
	비중(B/A)	32.8	32.8	32.8	32.8	32.8

자료: 주택관리공단

19) 지역난방: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거지역 등에 집단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난방방식

중앙난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중앙집중난방방식 난방설비로 난방하는 방식

개별난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별난방설비로 난방하는 방식

20)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열병합발전소나 폐열 회수 시설에서 생산한 열을 대규모 배관망을 통해 각 가정에 공급하며, 이 열공급은 난방용역(열공급 서비스) 형태로 제공됨. 따라서, 소비자는 난방연료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열공급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난방용역에는 열 생산에 사용된 난방연료비가 포함되어 있음.

[주택관리공단 관리 대상 영구임대주택 지역난방 부가가치세 감면규모]

(단위: 호, %, 백만원)

구 분	영구임대주택 총세대수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금액				
		세대 수	세대 비율	2021	2022	2023	2024	2025
경기	20,142	17,564	87.2	404	417	522	399	412
서울	24,086	15,430	64.1	363	363	444	412	419
인천	6,464	6,262	96.9	143	147	181	182	178
대구	12,480	6,558	52.6	119	121	149	61	68
전북	9,330	1,694	18.2	36	35	40	46	42
부산	15,571	0	0%	0	0	0	0	0
광주	10,407	0	0%	0	0	0	0	0
대전	9,170	0	0%	0	0	0	0	0
울산	2,362	0	0%	0	0	0	0	0
강원	4,914	0	0%	0	0	0	0	0
충북	6,258	0	0%	0	0	0	0	0
충남	4,971	0	0%	0	0	0	0	0
전남	5,101	0	0%	0	0	0	0	0
경북	7,812	0	0%	0	0	0	0	0
경남	4,537	0	0%	0	0	0	0	0
제주	1,120	0	0%	0	0	0	0	0
계	144,725	47,508	32.8	1,066	1,083	1,337	1,099	1,119

자료: 주택관리공단

□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주거관련 연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운영비용을 낮춤으로써 간접적으로 저소득층의 거주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2021~2025년 간 소득 5분위별 월평균 소비지출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소득 1분위의 경우 5~6%를 차지하는 반면, 5분위의 경우 3% 미만을 차지하고 있음.

[2021~2025년 가구당 소비지출 중 연료비 지출 비중 추이]

(단위: 원, %)

구 분	가계수지 항목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평균	소비지출(A)	2,494,854	2,640,003	2,792,035	2,890,478	2,939,091
	연료비(B)	82,110	89,475	103,851	106,883	111,856
	(B/A)	3.3	3.4	3.7	3.7	3.8
1분위	소비지출(A)	1,150,350	1,216,413	1,270,919	1,307,019	1,361,265
	연료비(B)	59,788	67,487	75,845	75,684	82,059
	(B/A)	5.2	5.5	6.0	5.8	6.0
5분위	소비지출(A)	4,313,942	4,519,760	4,855,590	4,948,678	5,037,696
	연료비(B)	107,914	116,586	135,256	140,394	147,352
	(B/A)	2.5	2.6	2.8	2.8	2.9

자료: 국가통계포털

8. 농·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 면제대상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제12호)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31년 12월 31일 ☐ 부 칙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개정안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난방용, 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목재펠릿²¹⁾이란 목재 또는 제재소(製材所) 부산물을 톱밥과 같은 작은 알갱이 형태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친환경 바이오 연료를 말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나 유엔 산하 정부간협의체(IPCC)에서 목재펠릿은 탄소배출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은 탄소중립 재생

21) 톱밥이나 미세하게 파쇄한 나무를 고온, 고압하여 단단하게 한 것이고, 직경 6~8mm, 길이 20mm 정도이고, 나무에 포함된 리그닌이 성형시 온도에 녹아서 냉각시에 단단하게 되어 접착제 등은 필요가 없고, 순수한 나무만으로 성형할 수 있다. 목재 펠릿은 목질 칩과 비교하여 수송, 보관성, 품질안정성, 착화성, 연소 제어성 등에서 뛰어남.(산림청 산림임업용어사전)

에너지 자원이며, 사용의 편리성, 이동의 용이함, 저렴한 가격 등 기존 목질계 연료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²²⁾

[목재펠릿과 탄소중립]



자료: 산림청

□ 동 제도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²³⁾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7년까지 적용하였고,²⁴⁾ 2018년부터는 면제 적용범위를 현행과 같이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임어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 축소하였으며, 이후 적용기한을 3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22) 나무는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해서 성장하고 나무가 베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를 온실가스 통계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연료를 태울 때는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IPCC 가이드라인), 기후변화협약(UNFCCC)이나 유엔 산하 정부간협의체(IPCC)에서는 목재를 탄소중립 연료임을 인정하고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권고함.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4) 저탄소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의 사업초기 시장형성 및 보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음.(「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23.8.)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3년 4억원, 2024년 3억원이고, 2025년에는 3억원, 2026년에는 3억원으로 전망됨.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망)	2026 (전망)
감면액	2	2	4	4	4	4	3	3	3

주: 2018년부터 농민·임업인 공급분에 한정함에 따라 조세지출 규모가 급감함.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최근 목재펠릿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그 수요가 하락²⁵⁾하고 있어 농민·임업인 지원, 화석연료 비중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해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목재펠릿 톤당 평균 가격]

(단위: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톤당 판매가격	393	352	418	454	444

자료: 산림청

산림청에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목재펠릿 이용 활성화’

25) 농·임업용 이용량: (2021년) 12.6천톤 → (2022년) 11.7천톤 → (2023년) 11.0천톤 → (2024년) 8.6천톤

정책은 농·산촌 지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등유)를 재생 에너지인 목재펠릿으로 대체²⁶⁾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임.

이는 난방용 등유와 목재펠릿은 비교적 대체가 용이²⁷⁾하기 때문에 최근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실내등유 가격의 상승²⁸⁾으로 대체 연료인 목재펠릿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립산림과학원 연구²⁹⁾에 따르면, 등유 가격과 목재펠릿 수요는 대체관계에 있어 등유가격이 63.8% 상승하면 목재펠릿 수요물량은 43.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농·임업용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은 영세한 농민·임업인 지원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둘째, 국내 생산량의 증가로 연간 목재펠릿의 자급률이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농·임업용(농민·임업인 난방용 포함) 이용량의 경우 2022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조세 감면을 통해 증가세 회복이 필요해 보임.

26) 산림청에 따르면 목재펠릿 1kg은 등유 0.4ℓ를 대체할 수 있음.

27) 통상 등유보일러와 목재펠릿 보일러 시설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료의 가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어 등유가격이라는 대체재의 영향은 목재펠릿의 균형물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산림경제연구 제29권, 「난방용 목재펠릿 수요와 공급 전망」, 2022)

28) 실내등유 가격: ('24.11월) 1,309.76원/ℓ → ('25.2월) 1,341.41원/ℓ

29) 국립산림과학원, 「석유가격을 반영한 난방용 목재펠릿 시장분석 결과」, 2022. 7.

[연간 목재펠릿 생산(공급)량 및 자급률]

(단위: 톤, %)

연도	합 계	국내 생산량	수입량	자급률
2009	20,569	8,527	12,042	41.5
2010	33,981	13,088	20,893	38.5
2011	64,013	34,335	29,678	53.6
2012	173,790	51,343	122,447	29.5
2013	550,271	65,603	484,668	11.9
2014	1,940,103	90,462	1,849,641	4.7
2015	1,552,821	82,137	1,470,684	5.3
2016	1,769,213	52,572	1,716,641	3.0
2017	1,773,294	67,446	1,705,848	3.8
2018	3,200,190	187,745	3,012,445	5.9
2019	2,809,845	243,287	2,566,558	8.7
2020	3,257,798	331,202	2,926,596	10.2
2021	3,836,896	658,336	3,178,560	17.2
2022	4,647,089	737,006	3,910,083	15.9
2023	4,254,088	777,405	3,476,683	18.3
2024	3,411,297	619,713	2,801,558	18.1

자료: 산림청

산림청에 따르면 농민과 임업인이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 등으로 구매한 이용량은 2024년 기준 3만 4,000명, 면세금액은 4억 7,500만원이고, 2025년 전망치로 수혜자는 3만 6,000명, 면세금액 4억 9,000만원³⁰⁾으로 전년 대비 소폭(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0) 산림청은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목재펠릿 수요 상승과 판매단가 상향 등으로 2024년도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이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상 금액(4억원)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최근 5년간 수혜 실적 및 전망]

(단위: 천톤, 백만원, 천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전망)
농·임업용 이용량*	12.6	11.7	11.0	8.6	9.5
면세금액	401	432	473	475	490
수혜자 수	4.2	3.9	3.7	3.4	3.6

주: 농·임업용 이용량에는 농민·임업인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목재펠릿 양도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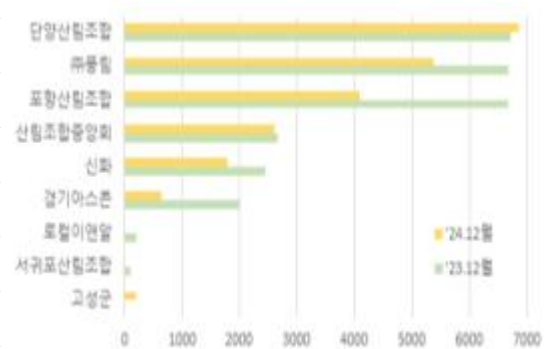
자료: 산림청

따라서, 최근 원목 가격 및 인건비 등 물가상승으로 목재펠릿 판매단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중단할 경우, 판매단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목재펠릿을 생산하는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연간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 생산 규모]

(단위 : 천원/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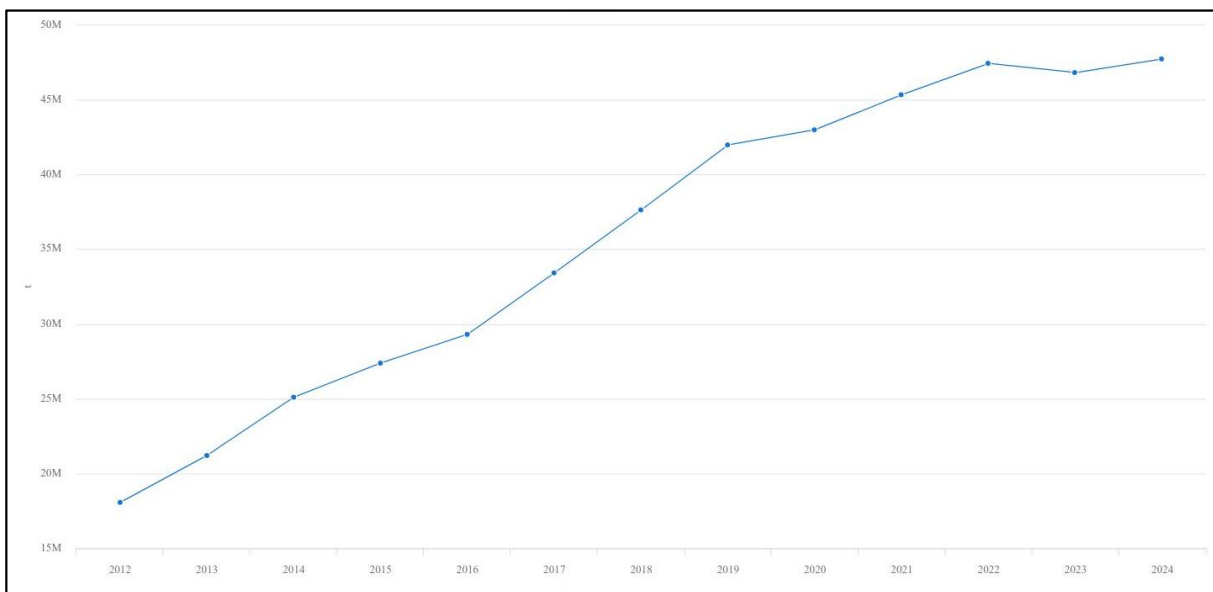
구 분	'23.12월	'24.12월	증감
(주)풍림	6,675	5,378	△1,297
포항산림조합	6,671	4,094	△2,577
단양산림조합	6,711	6,856	145
산림조합중앙회	2,673	2,600	△73
신화	2,451	1,784	△667
경기아스콘	2,000	651	△1,349
서귀포산림조합	106	-	순감
로컬이앤알	200	-	순감
고성군	-	203	순증



자료: 산림청

셋째, 전 세계적으로도 목재펠릿 생산량이 증가(2012년: 1,805만톤 → 2024년 4,773만톤)하고 목재펠릿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2012~2023년까지 목재펠릿은 연평균 13.9% 성장)하고 있으며,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AO)는 목재펠릿과 같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 세계 목재펠릿 생산량 추이]



자료: UN FAO

□ 다만, 개정안과 같이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할 경우 동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연도별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현황³¹⁾을 살펴보면, 2020년 1,145

31)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 후 공모 절차(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를 거쳐 주택용(농·임업용, 상업용, 주민편의)과 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음. 지원규모는 '25년 기준 848백만원이며, 지원기준은 주택용은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이며, 사회복지용은 국비 50%, 지방비 50%임

대에서 2024년 391대로 매년 보급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현황]

(단위: 대)

구분	계	'09~'19	'20	'21	'22	'23	'24
계	31,512	28,136	1,145	727	656	457	391
보일러	29,115	26,630	843	496	506	339	301
난로	2,397	1,506	302	231	150	118	90

자료: 산림청

목재펠릿 보일러의 보급 기반의 위축은 목재펠릿에 대한 실제 수요 감소로 이어져, 해당 세제지원을 통해 영세 농·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려는 당초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세수는 2027년 4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18억원(연평균 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국세 (74.7%)	△3	△3	△3	△3	△3	△14	△3
지방소비세 (25.3%)	△1	△1	△1	△1	△1	△5	△1
합계	△4	△4	△4	△4	△4	△18	△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참고로, 개정안은 농·임업용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2025년 세법 개정 당시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이었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 바 있음.

9.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제106조의 2제1항제1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면세대상 - 농어민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28년 12월 31일</u> (임종득의원안, 정희용의원안) - <u>2029년 12월 31일</u> (엄태영의원안, 박성훈의원안, 김영환의원안) - <u>2031년 12월 31일</u> (김성원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u>2033년 12월 31일</u> (김승수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엄태영의원안 2026. 3. 4. 발의(의안번호 17207),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70), 박성훈의원안 2026. 3. 10. 발의(의안번호 17352), 김성원의원안 2026. 3. 17. 발의(의안번호 17534), 정희용의원안 2026. 3. 19. 발의(의안번호 17625), 박상웅의원안 2026. 3. 25. 발의(의안번호 17722),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김영환의원안 2026. 5. 8. 발의(의안번호 18895), 김승수의원안 2026. 5. 12. 발의(의안번호 18930)

☐ 위 9건의 개정안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임종득의원안, 정희

용의원안), 2029년 12월 31일(엄태영의원안, 박성훈의원안, 김영환의원안), 2031년 12월 31일(김성원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또는 2033년 12월 31일(김승수의원안)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동 조항은 1972년 신설된 것으로, 당초 연근해어업용 선박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6년에는 농업용 기계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 1990년부터 농업용을 추가하였으며, 2003년부터 임업용 석유류를 추가하였음. 또한 1999년부터 일몰제가 도입되어 2026년 말까지 일몰이 연장됨.

한편, 2012년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2012. 1. 2.)으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3년 단위로 연장하되,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4년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지출 금액은 8,954억원으로,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면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정부는 감면세액이 2025년 9,846억원, 2026년에는 1조 104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 억원)

세 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부가가치세	2,565	2,893	3,654	3,132	2,969	4,090	4,218
개별소비세	289	376	276	239	232	271	279
교통·에너지·환경세	7,997	7,421	5,019	4,692	4,973	4,599	4,697
교육세	1,243	1,169	794	739	780	886	910
소 계	12,094	11,859	9,743	8,802	8,954	9,846	10,104

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여 제외되었으며, 면제규모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임(「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자료: 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2025년 기준 면세유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경유가 1,625천kl로 면세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등유 365천kl, 휘발유 187천kl 순을 보이고 있음.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

(단위: 천kl)

유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휘발유	211	202	201	194	189	190	187
경유	1,782	1,855	1,766	1,666	1,662	1,626	1,625
중유	42	44	38	34	20	19	21
윤활유	8.3	8.3	8.1	7.1	7.1	7.2	7.1
LPG	11	15	17	19	18	19	21
등유	446	442	440	422	349	340	365
부생연료유	-	-	-	-	28	26	29
합 계	2,500	2,567	2,472	2,344	2,274	2,228	2,255

자료: 재정경제부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열악하다고 평가되는 농·임·어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민의 소득보전에 기여할 수 있음.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0~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2025년 어가·임가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 감소하는 등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농가·어가·임가 가구당 연간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임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D)
	소득(A)	비율(A/D)	소득(B)	비율(B/D)	소득(C)	비율(B/D)	
2021년	47,759	64.1	52,392	70.3	38,133	51.2	74,507
2022년	46,153	59.1	52,911	67.7	37,898	48.5	78,113
2023년	50,828	60.5	54,779	65.2	37,383	44.5	84,054
2024년	50,597	58.5	63,652	73.6	38,405	44.4	86,464
2025년	54,667	60.5	58,980	65.2	38,307	42.4	90,405

주: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농업·어업·임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비임업소득을 합한 농가·어가·임가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인 이상 분기별 도시근로자가구소득(명목)의 합산액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농가·어가·임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동 제도를 통해 농·임·어업인의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지원하고 농·임·어업 생산 부가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농·임·어업인들의 가

계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둘째, 농·임·어업 생산물이 지니는 필수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동 조세특례는 농·임·어업 생산이 유발하는 연쇄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가되는 가격 부담을 줄여 농·임·어업 생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면서 국민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한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바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³²⁾으로서 동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6년 말에 도래함에 따라 현재 심층평가가 진행 중임. 따라서 일몰연장의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³⁾

○ 적용기한에 대해 각 개정안은 2년(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2033년 12월 31일까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

32)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④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33) 재정경제부는 의무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세법개정 시 연장 여부 및 필요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10.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제106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면제대상 -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제2호)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31년 12월 31일 (윤준병의원안, 김승수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윤준병의원안, 김승수의원안)

*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김승수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5)

☐ 위 2건의 개정안은 여객선, 도선 등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³⁴⁾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³⁵⁾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간접세 면제³⁶⁾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34) 「해운법」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5) 조합원(여객운송사업자 등)이 해운조합에 면세유 공급을 주문하면 해운조합이 정유사와 용역업체를 통해 조합원에게 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동 특례제도의 목적은 도서지방 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연안항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운항원가 상승을 억제하여 연안 여객운송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연안여객 운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도서지방 거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데 있음.

□ 우리나라 도서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총 3,390개의 섬이 있으며, 이 중 주민이 1명 이상 등록된 유인섬은 480개(14.2%), 무인도서는 2,910개(85.8%)임.

유인섬 총 480개 섬의 인구는 81만 3,475명으로, 이 중 100명 미만 인구인 유인섬이 286개로 전체 유인섬의 59.6%를 차지하고 있음.

3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인구규모별 유인점 현황]

(단위: 개, %)

구 분	점 개수	비 중
10명 미만	77	16.04
10~50명	142	29.58
50~99명	67	13.96
100~500명	118	24.58
500~999명	24	5.00
1,000~9,999명	43	8.96
10,000명 이상	9	1.88
계	480	100.00

자료: 한국섬진흥원

또한, 유인점 중 보건의료시설(약국 제외)을 보유한 점은 192개(40%), 교육·보육시설을 보유한 점은 99개(20.6%)이며, 보건의료시설 및 교육·보육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섬도 283개로 전체 480개 섬 중 58.9%에 이르고 있어 소규모 유인섬의 정주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유인섬의 보건의료시설 및 교육·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 %)

구 분	보건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유	192	40	99	20.6
무	288	60	381	79.4
계	480	100	480	100

주: 1. 보건의료시설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보건소 등이 있으며 약국은 제외

2. 교육·보육시설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있음

자료: 한국섬진흥원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는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³⁷⁾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동 특례제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석유류세 면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1975년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면제되는 세목이 특별소비세(현행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통세(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현행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확대되었으며,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된 이후 제도의 적용기한이 계속 연장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지출 감면액은 2023년 381억원, 2024년 392억원이고, 2025년에는 397억원, 2026년에는 406억원으로 전망되며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면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세 목	2022	2023	2024	2025(전망)	2026(전망)
부가가치세	190	150	143	132	136
개별소비세	9	9	8	7	7
교통·에너지·환경세	224	192	209	223	228
교육세	35	30	32	35	35
소 계	458	381	392	397	406

자료: 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37)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면제규모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임(「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 한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의 유종별 공급량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경유는 8만 2,232kl, 중유는 벙커-A유 6,051kl, LSFO(저유황 연료유) 4만 451kl로 나타났음.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 실적]

(단위 : kl)

구 분	계	경유	중유			경유+중유
		선박용 경유	벙커 A유	LRFO	LSFO	블렌딩유
2020년	126,148	76,070	10,211	-	-	39,867
2021년	136,342	81,071	8,211	17,130	-	29,930
2022년	140,771	85,540	6,069	-	39,792	9,370
2023년	134,382	80,608	6,037	-	43,137	4,600
2024년	128,734	82,232	6,051	-	40,451	-

주: 1. 중유에는 벙커 A유 LRFO(Low Residual Fuel Oil, 저잔사 연료유), LSFO(Low Sulfur Fuel Oil, 저유황 연료유)가 포함됨.

자료: 한국해운조합, 「2025 연안해운 통계연보」, 2025. 11.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연안여객선은 도서지역 이동을 위한 유일한 교통수단인바, 동 제도는 연안여객선의 운임 인상을 억제하고 연안여객선 업체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해상교통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연안여객 수송 실적을 보면, 2025년에는 연안여객 이용인원은 총 1,260만 4,000명으로, 이 중 도서민은 329만 4,000명임. 도서민 입장

에서는 연안여객선 등이 도서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대중교통으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

[연도별 연안여객 수송 실적]

(단위: 천명, %)

연도	계		일반		도서민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2019	14,585	100	11,027	75.6	3,557	24.4
2020	10,602	100	7,608	71.8	2,994	28.2
2021	11,464	100	8,498	74.1	2,966	25.9
2022	13,991	100	10,914	78.0	3,077	22.0
2023	13,268	100	9,991	75.3	3,277	24.7
2024	12,633	100	9,295	73.6	3,338	26.4
2025	12,604	100	9,310	73.9	3,294	26.1

자료: 한국해운조합, 「2026년도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2026.6.

한편, 2025년에 실시한 「연안운행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선박당 평균 운임매출 대비 유류비의 비중은 2024년 기준 40.1%이며, 면세유 이용에 따른 환급세액을 고려한 실유류비가 운임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7%로 유류비 부담 완화효과가 20.9%에 이름. 동 평가에서는 면세유 제도가 폐지될 경우 유류세 환급세액만큼 실유류비가 증가할 것인바, 실유류비에서 환급세액이 차지하는 비율(2024년 기준 26.4%)만큼 연안여객선 운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음.

[연안운행여객 선박당 운임매출, 유류비, 환급세액]

(단위: 백만원, %)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운임매출 (A)	1,693.5	1,162.8	1,387.5	2,253.6	2,173.2	2,179.8
유류비 (B)	802.5	535.4	730.3	1,101.2	869.8	874.2
유류세 환급세액 (C)	286.4	239.8	250.4	185.9	160.9	182.6
실유류비 (D=B-C)	516.1	295.6	479.9	915.3	708.9	691.6
유류비/운임매출 (E=B/A)	47.4	46.0	52.6	48.9	40.0	40.1
실유류비/운임매출 (F=D/A)	30.5	25.4	34.6	40.6	32.6	31.7
유류비 부담 완화 효과 [(E-F)/E]	35.7	44.8	34.2	17.0	18.5	20.9
환급세액/실유류비 (C/D)	55.5	81.1	52.2	20.3	22.7	26.4

주: 여객선운항사업자 및 도선 운항 사업자 포함

자료 :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연안운행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2025. 9.

특히, 일반·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운항사업자의 경우 2024년 평균 영업이익이 △4,500만원이며 유류세 환급세액을 고려한 수정 영업이익은 △5억 7,000만원임. 특히 유류세 환급세액을 제외한 수정 영업이익 및 수정 당기순이익이 2019~2023년 5년 내내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면세유 제도가 없으면 수익성이 매우 열악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연안여객선 운항사업자의 평균 재무상태]

(단위: 백만원)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산총계	41,003	48,564	48,832	50,646	54,483
부채총계	30,840	38,052	39,176	41,112	45,597
자본총계	10,163	10,332	9,655	9,535	8,777
매출액	6,152	5,104	5,831	8,018	8,820
매출총이익	606	346	304	630	1,237
유류세 환급세액(A)	854	796	755	581	542
영업이익(B)	△448	△587	△706	△521	△45
수정 영업이익(B-A)	△1,302	△1,346	△1,419	△1,067	△570
당기순이익(C)	258	△458	△371	109	152
수정 당기순이익(C-A)	△596	△1,265	△1,074	△410	△346

주: 여객선운항사업자만 포함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2025. 9.

즉, 연안운항여객 선박에 대한 면세유 제도는 운항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어 영업이익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임가격 인하 또는 유지 및 항로 유지 등을 도모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봄.

둘째, 정부는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이 여객선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지정³⁸⁾하여 운항결손액을 보조하고 있는데, 면세유 혜택이 중단될 경우 그만큼 운임 및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

38) 「해운법」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 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세수 증대의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음.³⁹⁾

우리나라 전체 연안여객항로는 2025년 말 기준 총 100개 항로로 71개 일반항로와 29개 보조항로⁴⁰⁾가 있으며, 119척의 일반항로 연안여객선과 30척의 보조항로 연안여객선이 운항 중에 있음.

[우리나라 연안여객 항로 개요]

(단위: 개)

구분	항로수			척수			업체수
	계	일반항로	보조항로	계	일반항로	보조항로	
계	100	71	29	149	119	30	58(54)

주: 업체수의 괄호 안은 중복업체를 제외한 업체수임

자료: 「2026년도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한국해운조합, 2026.6.

국가보조항로에 대한 결손보상금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2021~2022년을 제외하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5년 결손보상금 예산규모는 6개사 29개 항로에 200억 3,200만원임.

39)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은 연안여객선 면세유 제도 적용을 받음에도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를 특정하여 추가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어, 연안여객선 면세유 제도와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고 운항결손액 산정 시 유류비도 비용으로 포함하나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안여객선 면세유 제도와 중복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음.

40) 섬주민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사업 채산성이 낮은 취항 기피 항로에 대하여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보조하는 항로이며, 보조항로사업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되며 선정업체는 3년 동안 계약함.

[국가보조항로 운영 추이]

(단위: 개, 척, 백만원)

연도	항로수	취항선박	결손보상금 예산
2019	27	26	12,515
2020	27	26	13,923
2021	27	27	13,729
2022	27	27	13,231
2023	29	28	16,498
2024	29	30	19,873
2025	29	30	20,032

자료: 한국해운조합, 「2026년도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2026.6.

연안여객선 면세유 제도가 폐지된다면 적자항로가 늘어남에 따라 여객사들이 운항 유지를 포기할 경우 연안항로의 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곧 국가보조항로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음. 상기 연안여객선 운항사업자의 평균 유류비 환급세액이 2023년 기준 5억 4,200만원인 데 반해, 결손보상금은 2023년 8개사에 대해 평균 20억 6,200만원, 2024년 8개사에 대해 평균 24억 8,400만원, 2025년 6개사에 대해 평균 33억 3,9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임. 즉, 연안여객선 면세유 조세특례보다 국가보조항로 지원 재정지출이 사업자당 규모가 커 면세유 혜택이 종료될 경우 항로 유지를 위한 재정지출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로 5년 연장할 경우, 2027년 495억원, 2032년 67억원 등 2027~2032년 6년

간 총 2,796억원(연평균 46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교통·에너지·환경세		△279	△304	△303	△302	△302	△25	△1,514	△252
개별소비세		△5	△5	△5	△5	△5	△0.4	△27	△4
교육세		△43	△46	△46	△46	△46	△4	△231	△39
자동차세(지방세)		△72	△79	△79	△79	△78	△7	△394	△66
부가 가치세	국세(74.7%)	△72	△95	△94	△94	△93	△23	△471	△79
	지방소비세(25.3%)	△24	△32	△32	△32	△31	△8	△160	△27
전체		△495	△562	△560	△557	△555	△67	△2,796	△466

주: ①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는 매월 공급량에 대한 석유 판매업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달 공제 및 환급되므로 당해연도 11/12, 차년도에 1/12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②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3/4, 차년도에 1/4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2032년에 환급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2025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2025년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이었던 연안운행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였음.

정부는 당초 3년 연장안을 제출하였으나 논의과정에서 환경적 영향⁴¹⁾을 고려하여 1년만 연장하되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로 하여금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같이 의결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기한

41)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나무는 성장과정에서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고 나무가 베어지는 과정에서 발생된 탄소를 온실가스 통계로 산정하고 있어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태울 때는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라 목재펠릿 역시 탄소배출에 중립적인 원료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재펠릿 사용 시 실제 온실가스가 LNG 등 보다 많이 배출되며 국내외 산림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음.(문대림·이학영·김한규의원 주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바이오매스 발전의 대전환 토론회(2025.8.19.),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2025.10.23.))

연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11.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제111조의5제1항) ○ 감면대상 -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 감면내용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리터당 56원 감면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탄력세율)에 따라 경유 375원/ℓ × 0.15 = 56원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31년 12월 31일 ☐ 부 칙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 예정인 연안화물선박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연안화물선박”이란 「해운법」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⁴²⁾에 사

42) 「해운법」

제23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제1호와 제2호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용되는 선박으로 정해진 항로 없이 화주의 의뢰를 받아 국내항에서 국내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함.

- 동 특례제도는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경유 선박과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을 전환한 연안화물선박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의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해주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6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는 경유와 중유가 연소 시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을 배출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2020년 이전 기준에 따르면 경유는 황 함유량이 1.0% 이하여야 하고, 중유는 2.0~3.5% 이하여야 했음.

[선박유에 대한 황 함유량 규제 강화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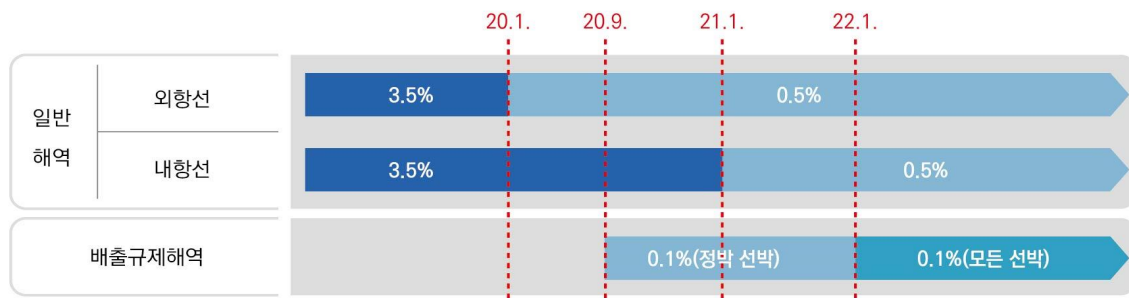
선박연료유		2020년 1월 1일 이전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유		1.0%	0.5%
중유	A중유	2.0%	
	B중유	3.0%	
	C중유	3.5%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1.0%	0.1%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 1월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함⁴³⁾에 따라 정부는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경유와 중유 모두 0.5%로

43)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오염방지협약(2016년 10월 결정, 2020년 1월 시행)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⁴⁴⁾하였으며, 특히 배출규제해역을 주로 항해하는 연안화물선은 황 함유량 0.1%의 연료유 사용 의무가 부과됨.

[시점별 황 함유량 규제]



*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오염방지협약('16.10월 결정, '20.1월 시행)

** 배출규제해역 : 5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인근 해역

- ①단계('20.9월) : 배출규제해역 내 정박 중인 선박에 황 0.1% 이하 규제 적용
- ②단계('21.1월) : 전 해역 운항 중인 선박에 황 0.5% 이하 규제 적용
- ③단계('22.1월) : 배출규제해역 내 운항 중인 선박에 황 0.1% 이하 규제 적용

□ 한편,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공급량을 살펴보면 2022년 4만 7,471kl, 2023년 5만 1,017kl, 2024년 5만 2,573kl, 2025년 5만 3,473kl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4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배출규제해역: 0.1퍼센트(무게 퍼센트)

2. 그 밖의 해역

가. 경유: 0.5퍼센트(무게 퍼센트).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나. 중유: 0.5퍼센트(무게 퍼센트)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한국해운조합 세액감면 대상 경유 공급 현황]

(단위 : kl)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액감면 대상	30,513	47,741	51,074	52,573	53,473

주: 과세 석유류에는 경유, 벙커 A유, LSFO(Low Sulfur Fuel Oil, 저유황 연료유), 혼합유 등이 포함

자료: 한국해운조합

또한, 연안화물선박용 경유에 대한 조세지출 금액은 2023년 32억원, 2024년 33억원이고, 2025년에는 33억원, 2026년에는 34억원으로 전망되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면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연안화물선박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의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세 목	2022	2023	2024	2025(전망)	2026(전망)
교통·에너지·환경세	26	28	29	29	30
교육세	4	4	4	4	4
소 계	30	32	33	33	34

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가 교육세로 부과됨.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연안화물선박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선박유의 황 함유량에 대한 국제환경규제 및 탄소중립정책 이행을 위해 유류세 감면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연안화물선 1,955척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753척(38.5%)로 아직 경유 미전환 선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므로 동 감면특례의 연장을 통해 경유로의 적극적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4년 내항화물선사는 30,512kl를 경유로 전환하여 대기오염물질 2,173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나 연료유 전환 특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음.

[연료유 전환으로 인한 대기환경개선 효과]

구분	사용량(ℓ)	대기오염물질(kg)			
		황산화물(SO _x)	질소산화물(NO _x)	탄산가스	합계
중유	30,512,600	2,029,048	244,096	26	2,273,170
경유		25,935	73,228	23	99,186
감축량	-	2,003,113	170,868	3	2,173,984

주: 환경부 “대기오염물질발생량계산방법”에 따라 계산
자료: 한국해운조합

둘째, 도서지역에 생필품을 수송하는 필수 교통수단인 연안화물선박은 선박연료유로 경유와 중유를 사용하는데 중유 가격이 경유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중유 사용량이 많았으나, 규제 강화에 따라 선주는 황 함유량이 적은 경유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경유와 중유의 가격 차이로 인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감면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중유와 경유 정유사 평균 판매가격 비교]

(단위: 원/ℓ)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3월	'26.4월	'26.5월
선박용 경유(A)	1,606.5	1,374.5	1,388.9	1,379.2	1,476.5	2,036.4	1,974.0
벙커C유 (중유)(B)	1,006.5	886.3	919.4	871.5	823.8	1,375.3	1,251.1
차이(A-B)	600.0	488.2	469.5	507.7	652.7	661.1	722.9

자료: 한국석유공사, 「국내 석유제품 월간 가격 동향(2026.6.)」을 바탕으로 재작성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2027년 40억원 등 2027~2031년까지 5년간 총 208억원(연평균 4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31	△32	△33	△34	△34	△164	△33
교육세	△5	△5	△5	△5	△5	△25	△5
부가가치세	△4	△4	△4	△4	△4	△19	△4
합계	△40	△41	△42	△42	△43	△208	△4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2025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2025년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이었던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였음.

정부는 당초 3년 연장안을 제출하였으나 논의과정에서 환경적 영향⁴⁵⁾을 고려하여 1년만 연장하되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로 하여금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같이 의결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45)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나무는 성장과정에서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고 나무가 베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를 온실가스 통계로 산정하고 있어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태울 때는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라 목재펠릿 역시 탄소배출에 중립적인 원료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재펠릿 사용 시 실제 온실가스가 LNG 등 보다 많이 배출되며 국내외 산림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음.(문대립·이학영·김한규의원 주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바이오매스 발전의 대전환 토론회(2025. 8. 19.),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2025.10.23.))

12. 농·수협 조합원의 융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면제(제116조제1항) ○ 면제대상 - 신탁,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및 어촌계, 엽연초생협,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증서(동일인이 받는 융자금 액 1억원 한도)(제5호) - 어린이예금통장, 신탁,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및 어촌계, 엽연초 생협, 산림조합 조합원의 예·적금 및 통장(제6호) -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농·어업경영 규모 확대사업에 대한 재산권 설정·이전 등 관련 증서(제7호) - 농협조합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또는 주택건축용 자재 외상구입 서류(제9호) - 「공유수면매립법」상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제11호) - 창업기업이 2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제19호) ☐ 적용기한(제116조제2항제3호) ○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 <u>2026년 12월 31일</u> ○ 제19호 - <u>2026년 12월 31일</u>	☐ 인지세 면제(제116조제1항)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 <u>2028년 12월 31일</u> (임종득의원안) - <u>2029년 12월 31일</u> (박성훈의원안) - <u>2031년 12월 31일</u> (김성원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제19호 - <u>2031년 12월 31일</u> (윤준병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부 칙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70), 박성훈의원안 2026. 3. 10. 발의(의안번호 17352), 김성원의원안 2026. 3. 17. 발의(의안번호 17534), 박성웅의원안 2026. 3. 25. 발의(의안번호 17722),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위 5건의 개정안은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 예·적금, 농어촌정비사업·농지은행사업 등 재산권 설정·이전 등 관련 서류 등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영세 농어민 등 조합원의 생활안정 지원 및 실질적 소득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임종득의원안은 2028년 12월 31일로 2년, 박성훈의원안은 2029년 12월 31일로 3년, 김성원의원안, 박성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은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임종득의원안, 박성훈의원안, 김성원의원안, 박성웅의원안은 농어민 지원을 위해 금전소비대차 관련 증서, 예·적금 및 통장,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재산권 설정·이전 등 관련 증서, 농촌주택개량자금 용자 등에 대해서만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반면 윤준병의원안은 창업기업이 창업 2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기위해 작성하는 서류 등에 대해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인지세법」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⁴⁶⁾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농어업 관련 용자 서류 등에 관한 인지세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농·수협 조합원의 용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는 1970년 도입되었음. 제도 신설 당시에는 농협 등으로부터 용자 등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증서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가 시행되었고, 예금·적금증서, 통장,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변경 등에 관한 서류는 1974년부터, 농협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용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구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및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는 1982년부터, 창업기업이 용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는 1997년부터 인지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지세 면제 특례대상 문서는 다음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른 인지세 면제대상 문서]

구 분	인지세 면제대상 문서	일몰기한
제5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의 조합·중앙회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단, 동일인이 받는 용자금액 합계액 1억원 이내 한정)	2026.12.31.

46)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 분	인지세 면제대상 문서	일몰기한
제6호	어린이예금통장,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제7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정주생활사업과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제9호	농협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제11호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제19호	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제31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024.12.31.

주: 위에 적시되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의 다른 호는 현재 모두 삭제

□ 인지세 면제 금액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제5호, 제19호),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따른 재산권 변경 등에 관한 증서(제7호),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관련 서류(제9호),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제11호)의 경우 기재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이며,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제6호)에 대해서는 100원의 인지세가 면제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에 의해 면제되는 인지세액]

구 분	증서 기재금액	세액	비 고
· 신탁·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으로부터의 금전소비대차(1억원 이하) 관련 증서(제5호)	1,000만원~3,000만원	2만원	* 과세문서로서 기재 금액이 없는 경우 ① 과세문서에 표기된 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계산된 금액 ②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2만원
· 농어촌정비사업·농지은행사업 등 관련 재산권 설정·이전 등 관련 서류(제7호)	3,000만원~5,000만원	4만원	
·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등 관련 서류(제9호)	5,000만원~1억원	7만원	
·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제11호)	1억원~10억원	15만원	
· 창업자가 창업 2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제19호)	10억원~	35만원	
·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통장 등(제6호)	(해당사항 없음)	100원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 및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동 조세특례는 적용기한이 계속 연장됨에 따라 제도가 유지되어 왔으며, 위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따라 일몰이 종료하는 농·임·어업인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특례가 연장될 경우 농·임·어업인 및 서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소득보전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0~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2025년 어가·임가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 감소하는 등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농가·어가·임가 가구당 연간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임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D)
	소득(A)	비율(A/D)	소득(B)	비율(B/D)	소득(C)	비율(B/D)	
2021년	47,759	64.1	52,392	70.3	38,133	51.2	74,507
2022년	46,153	59.1	52,911	67.7	37,898	48.5	78,113
2023년	50,828	60.5	54,779	65.2	37,383	44.5	84,054
2024년	50,597	58.5	63,652	73.6	38,405	44.4	86,464
2025년	54,667	60.5	58,980	65.2	38,307	42.4	90,405

주: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농업·어업·임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비임업소득을 합한 농가·어가·임가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인 이상 분기별 도시근로자가구소득(명목)의 합산액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농가·어가·임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부수비용인 인지세를 면제하는 것은 농·임·어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의 면제 제도”가 선정·평가되었는데, ① 동 조세특례는 농어민의 소득 향상, 서민의 재산 형성과 안정적 생활 도모 측면에서 특례의 정책목적이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②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 등과 신용수준이 낮은 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소비대차증서 인지세 한도(1억원) 상 고액 자산 농어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③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수준이 낮은 수혜대상일수록 동 조세특례를 통한 지

원효과가 커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므로, 동 면제 제도를 일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음.

□ 다만, 적용기한에 대해 각 개정안은 2년(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⁷⁾

47) 재정경제부는 지원실적, 제도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세법개정시 적용기한 연장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13.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제121조의23제10항) ○ 면제대상 - 농협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자회사 포함)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28년 12월 31일</u> (임종득의원안) - <u>2029년 12월 31일</u> (박성훈의원안) - <u>2031년 12월 31일</u> (김성원의원안, 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70), 박성훈의원안 2026. 3. 10. 발의(의안번호 17352), 김성원의원안 2026. 3. 17. 발의(의안번호 17534), 신성범의원안 2026. 4. 21. 발의(의안번호 18480),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위 5건의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간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연장하여 농협중앙회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임종득의원안은 2028년 12월 31일로 2년, 박성훈의원안은 2029년 12월 31일로 3년, 김성원의원안, 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은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는 인사, 급여, 교육, 유통 등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전산시스템의 운영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농협정보시스템에서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 원칙적으로는 농협중앙회, 농협은행과 농협정보시스템이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탁한 법인으로부터 시스템 운영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10항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시스템의 운영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⁴⁸⁾.

□ 동 면세제도는 2012년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현재까지 적용기한이 5회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2009년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각각 신설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⁴⁹⁾을 국회에 제출하였고⁵⁰⁾, 이후 해당 내용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8) 농협정보시스템은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 전에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구조개편 전부터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 왔음. 따라서 농협정보시스템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4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020호, 2009. 12. 16. 정부 제출)

50) 정부가 농협의 구조개편을 추진한 것은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자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음.

(대안)」⁵¹⁾에 반영되어 2012년 3월 2일 시행되었음.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농협에 일시적 또는 지속적인 조세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였는데,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그 중 하나였음. 현재의 농협중앙회, 농협은행과 그 외 농협 자회사는 구조개편 전에는 같은 법인(농협중앙회)에 속해 있었으므로 상호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구조개편으로 법인이 분리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새롭게 발생한 것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 제도는 2011년 12월 31일 세법 개정으로 2013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적용기한이 계속 연장되어 왔음.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연혁]

개정일	개정 내용
2011. 12. 31. (도입)	중앙회 → 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보·손보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2013년 12월말)
2014. 1. 1. (1차 개정)	적용기한 4년 연장(∼2017년 12월말)
2016. 12. 20. (2차 개정)	면제대상 전산용역 추가: 농협은행 → 중앙회, 금융지주회사, 농협생보·손보사
2017. 12. 19. (3차 개정)	적용기한 2년 연장(∼2019년 12월말)
2019. 12. 31. (4차 개정)	적용기한 2년 연장(∼2021년 12월말)
2021. 12. 28. (5차 개정)	적용기한 2년 연장(∼2023년 12월말)
2023. 12. 31. (6차 개정)	적용기한 3년 연장(∼2026년 12월말)

□ 농협 전산용역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지주·하나로유통·양곡과, 금융지주·은행·생명·손해보험에 전산용역을 공급하고 있

5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1811085호, 2011. 3. 10.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안)

으며, 공급가액은 2025년 기준 265억 6,100만원임. 한편,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및 금융지주·생명·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공급가액은 2025년 기준 381억 6,200만원 수준임.

[농협중앙회 공급 전산용역 현황]

수탁기관	위탁기관	위탁 전산시스템	전산용역	공급가액(백 만 원)	
			2023년	2024년	2025년
농협 중앙회	농협경제지주	·관리시스템	16,763	15,543	12,971
	농협하나로유통	·경영정보시스템	1,388	1,309	985
		·경제·유통시스템			
	농협양곡	·인프라, 통신, 정보보호 등 ※ 25년 이후 유통시스템 제외	39	42	41
	NH농협금융지주	·관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등	593	829	696
	NH농협은행	·관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범농협 통합구매 등	8,920	8,954	9,240
	NH농협생명	·관리시스템	1,198	1,215	1,315
NH농협손해보험	·범농협 통합구매 등	1,155	1,183	1,313	
소 계			30,056	29,075	26,561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인프라 및 보안 운영 ·디지털금융 일부 등	38,767	38,768	35,190
	NH농협금융지주	·관리시스템 일부 ·리스크관리시스템 등	1,588	1,999	2,262
	NH농협생명	·관리시스템 일부 ·전산기기수급관리 등	317	359	416
	NH농협손해보험	·관리시스템 일부 ·전산기기수급관리 등	204	254	294
소 계			40,876	41,380	38,162
합 계			70,932	70,455	64,723

주: 전산용역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의미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농협은행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모는 2023년 70억 9,300만원 2024년 70억 4,600만원, 2025년 64억 7,200만원 수준임. 2025년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별 감면규모는 농

협중앙회 35억 1,900만원, 농협은행 9억 2,400만원, 경제지주 12억 9,700만원 등 기타 회사 20억 2,900만원이었음.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단위: 백만원)

연 도		2023년	2024년	2025년
면제	농협중앙회 부담분	3,877	3,877	3,519
	농협은행 부담분	892	895	924
	기 타	2,325	2,273	2,029
	계	7,093	7,046	6,472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간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정부가 주도한 농협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농협은 농업인의 이익을 위하여 농민자본으로 구성된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협의 구조개편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개편으로 인한 추가적인 조세부담까지 농협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당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개정 관련 합의사항으로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하고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세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⁵²⁾.

둘째, 농협중앙회 등은 회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농업·축산 경제사업, 상호금융사업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농협중앙회 등의 사업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임.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농협중앙회의 세부담 증가로 인한 고유목적사업 재원의 감소로 농업인 지원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농협중앙회가 공급받는 전산용역은 대부분 농협조합을 위한 것으로서 동 과세특례가 폐지될 경우 농협조합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2025년 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산용역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의 부담 구조를 보면, 총 감면세액 35억 1,900만원 중 76%인 26억 6,400만원을 농협조합이 부담하고

52) 당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농협법 개정관련 합의사항’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법 통과 이후 실사를 하여 확정된 자본금의 30% 이상을 경제사업부문에 우선 배분함.
- 정부는 농협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다른 농업부문의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함.
- 정부는 사업구조개편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하고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세수준 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함.

있는바, 동 면세 특례가 일몰될 경우 농협조합의 세부담이 26억 6,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음.

[2025년 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산용역 비용 분담 구조]

(단위: 백만원, %)

구 분	농협조합	중앙회	경제지주	합 계
분담금액	26,641	6,971	1,578	35,190
감면세액	2,664	697	158	3,519
비 중	76	20	4	100

자료: 농협중앙회

□ 다만, 동 과세특례가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지원적 성격임을 감안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협의 전산용역에 대한 면세는 농협이 분할된 이후 안정화를 위한 일시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사업구조 개편 완료 이후에도 동 면세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은 2012년부터 실시되어 2017년 경제사업 완전 분리를 통해 최종 완료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 당시 적용되었던 부가가치세 면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조세특례의 한시적 운영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제도의 관행적 연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특히 전산용역의 경우 구조개편의 궁극적인 목표인 농민 지원과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구조 개편 이후 조직 안정화의

임시방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⁵³⁾

둘째, 타 법인에 대해서는 전산용역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바,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⁵⁴⁾

「부가가치세법」상 법인격이 분리된 주체 간의 용역 공급은 과세 거래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임. 이에 따라 일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명칭사용권(상표권) 및 전산시스템 위탁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반면,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및 경제·금융지주회사 간 용역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어 과세형평성 상 적정하지 않다는 것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83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464억원(연평균 9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53) 기획재정부,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8) 농협·수협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3.

54) 기획재정부,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8) 농협·수협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3.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일몰기한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2028년말	△83	△88	-	-	-	△170	△85
~2029년말	△83	△88	△93	-	-	△263	△88
~2031년말	△83	△88	△93	△98	△103	△464	△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다만,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동 제도의 감면기간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는데, 각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2년(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2029년 12월 31일까지) 또는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연장할 경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⁵⁾

55) 재정경제부는 제도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세법개정 시 적용기한 연장 여부 및 필요시 제도개선 필요사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1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25제7항·제8항) ○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제7항) - 면제대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 적용기한: <u>2026년 12월 31일</u> ○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제8항) - 면제대상: ● 수협은행이 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적용기한: <u>2026년 12월 31일</u>	☐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면제대상: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31년 12월 31일</u> ○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제8항) - 면제대상: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31년 12월 31일</u> ☐ 부 칙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개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수협은행이 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수협중앙회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25제7항은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8항에서는 수협은행이 조합·수협

중앙회가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동 면세제도는 수협중앙회에서 신용부문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분리에 따른 추가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5년 12월 신설되었으며, 이후 5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수협중앙회 분할 과세특례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규모는 2024년 69억원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부가가치세	61	72	69	88	90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명칭사용료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⁵⁶⁾에 따라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은행·수협유통 등 영리법인이 수협중앙회에 지불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수산물 판매·유통 활성화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명칭사용료는 최근 증가추세로

56)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명칭사용료) ① 중앙회는 수산물 판매·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명칭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5년에는 557억 9,500만원 수준임.

[수협중앙회 명칭사용료 부과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협은행	31,186	40,037	39,769	44,632	55,712
수협유통 ¹⁾	-	-	67	31	-
수협노량진수산	35	36	37	38	41
수협개발	15	22	30	36	42
위해수협 ²⁾	0.4	0.5	0.9	1.6	-
계	31,236	40,096	39,904	44,739	55,795

주: 1)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수협유통의 명칭사용료 부과 제외('20~'22, '24.3분기~'26년) 결정

2) '24.11.29. 청산 완료

자료: 수협중앙회

전산용역의 경우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등이 전산시스템을 상호 위·수탁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수협은행이 조합으로부터 254억 5,200만원, 수협중앙회로부터 6억 4,200만원을 용역비로 수취하는 등 총 260억 9,400만원의 전산용역비가 발생하였음.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전산운영 위·수탁용역 비용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수협은행 ^{공급} →조합 ^{사용}	수협은행 ^{공급} →중앙회 ^{사용}	계
2021	19,475	283	19,758
2022	21,098	284	21,382
2023	22,168	656	22,824
2024	23,930	661	24,591
2025	25,452	642	26,094

자료: 수협중앙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신경분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조직개편의 본 목적인 어업인의 이익증진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명칭사용의 경우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자회사의 수협중앙회의 명칭(무형자산)을 사용하는 행위가 법인격이 다른 주체 간의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었음. 이는 기업 가치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따른 부가가치 발생을 전제로 하나, 법적 분리라는 특수 상황에 기인한 세부담 증가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산용역의 경우 과거 수협중앙회 사내조직에서 각 사업부문에 전산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⁵⁷⁾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임.

둘째,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타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명칭사용료의 경우 수협중앙회가 경제·교육지원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영리법인에 부과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57)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될 경우 해당 부담만큼 수협중앙회 경제·교육지원 자금이 축소되어 어업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목적 달성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또한, 수협중앙회에 앞서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한 농협의 경우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몰 없이 감면⁵⁸⁾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협에 대해서도 명칭사용료 과세특례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음.⁵⁹⁾

□ 다만, 동 과세특례가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지원적 성격임을 감안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업구조 개편 완료 이후에도 동 면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은 2016년에 실시되어 2022년 공적 자금 상환까지 완료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 당시 적용되었던 부가가치세 면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조세특례의 한시적 운영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제도의 관행적 연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특히 전산용역의 경우 구조개편의 궁극적인 목표인 어민 지원과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구조 개편 이후 조직 안정화의

58)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⑨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9) 농협의 경우 해당 조문 신설(2011년 12월 31일) 당시에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기한이 있었으나, 2013년 세법 개정 시 적용기한이 삭제되어 현재는 일몰 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임시방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⁶⁰⁾

둘째, 타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바,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⁶¹⁾

「부가가치세법」상 법인격이 분리된 주체 간의 용역 공급은 과세거래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임. 이에 따라 일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명칭사용권(상표권) 및 전산시스템 위탁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반면,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간 용역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어 과세형평성 상 적정하지 않다는 것임.

-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88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440억원(연평균 8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60) 기획재정부,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8) 농협·수협중앙회 부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3.

61) 기획재정부,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8) 농협·수협중앙회 부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3.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국세 (74.7%)	△66	△66	△66	△66	△66	△329	△66
지방소비세 (25.3%)	△22	△22	△22	△22	△22	△111	△22
합계	△88	△88	△88	△88	△88	△440	△8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다만,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동 제도의 감면기간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는데, 동 개정안은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연장할 경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²⁾

문 의 처

02)6788-5147

62) 재정경제부는 제도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세법개정 시 적용기한 연장 여부 및 필요시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5년 연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